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 설치·운영 등〉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4290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 은 호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3
1.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 설치·운영 등	3

I. 개요

1.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4290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도읍의원 등 13인
- (2) 제 안 일 : 2025. 11. 14.
- (3) 회 부 일 : 2025. 11. 17.

나. 제안이유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자 수는 26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음. 이 같은 불명예에서 벗어나고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전 분야를 망라한 촘촘하고 탄탄한 생명안전망 조성, 생명존중문화 확산 등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자살은 사회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므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기관으로 연계시키는 등의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민간단체까지 사회 전 분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하여 생명존중문화가 확산되도록 하여야 함.

이에 국가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와 협조하여 지역 맞춤형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단체 등과 협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상시 점검하기 위하여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의 유족이 지원 대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족과 자살예방센터를 연계하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II. 검토의견

1.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 설치·운영 등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추진할 때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및 안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5조(생명존중문화 조성) (생략) <u><신설></u>	제15조(생명존중문화 조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단체 등과 협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생명존중문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의 구축) ① (생략) <u><신설></u>	제19조(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의 구축)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통신망

현행	개정안
<u><신설></u>	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상시 점검하기 위하여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이하 이 조에서 “모니터링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모니터링센터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차단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니터링센터로부터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u><신설></u>	④ 모니터링센터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된 자살유발정보에 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구조, 수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생략)	⑤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	⑥ 제5항----- ----- -----

현행	개정안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21113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조의3(긴급구조대상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 ① 긴급 구조기관의 장은 자살위험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긴급구조대상자”라 한 다)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 하여 긴급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 으로는 긴급구조대상자의 위치 등을 파악하여 구조할 수 없는 경우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 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자료의 열람 이나 제출을 요청(이하 “자료제공 요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 ⑨ (생략) 법률 제21113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조의5(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유발정 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 법률 제21113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조의3(긴급구조대상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 ① ----- ----- ----- ----- -----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 법률 제21113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삭 제>

현행	개정안
<u>각 호의 업무(이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이라 한다)를 수행하여야 한다.</u> <u>1. 자살유발정보 및 작성자에 대한 식별</u> <u>2. 자살유발정보 유통 차단·삭제 요청</u> <u>3. 자살유발정보와 관련한 긴급구조 신고 또는 유통자에 대한 신고 등 사후관리</u> <u>4. 그 밖에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u> <u>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가 자살유발정보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삭제 등 해당 정보가 이용자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u> <u>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와 관련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u>	

현행	개정안
우에는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수사, 구조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② (생략)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의 유족이 자살자의 유족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과 그 이용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유족과 자살예방센터를 연계하여 지원 대책과--- ④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안 제15조제2항은 현행법 제15조¹⁾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범국민적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일 때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

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5조(생명존중문화 조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살 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단체 등과 협조하여 범국민적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단체가 자율적으로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사업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임에도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은 사례가 빈번할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증가시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안 제19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자살 유발정보를 상시 점검하는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모니터링센터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차단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이러한 입법취지는 2026년 5월 12일 시행 예정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법률 제21113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19조의5²⁾에 따른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에 반영되어 있음.

시행예정인 법률에서는 모니터링 업무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³⁾에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9조의5(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이라 한다)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자살유발정보 및 작성자에 대한 식별
 2. 자살유발정보 유통 차단·삭제 요청
 3. 자살유발정보와 관련한 긴급구조 신고 또는 유통자에 대한 신고 등 사후관리
 4. 그 밖에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가 자살유발정보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삭제 등 해당 정보가 이용자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와 관련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수사, 구조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2조의4(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관련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해당 재단은 2025년 9월 기준 1명이었던 모니터링 전담인력을 2026년부터는 4인으로 확충하는 등 준비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이 도입하려는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는 시행예정인 법률에 따라 수행 예정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한 후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 관계 부처 의견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생명존중문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으나 국가재정에는 부담을 줄 수 있어 재정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고,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은 시행예정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살예방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 개발 및 정책 분석
2.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지원
3. 제11조에 따른 자살실태조사 지원
4. 제11조의2에 따른 심리부검 지원
5.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6.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7.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8. 자살예방 연구·개발
9.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10.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업무 지원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③ 재단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재단에는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이사장을 두며,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⑧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으로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이미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모니터링센터 설치의 필요성은 해당 법률의 시행 이후 자살유발정보 차단에 대한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이후에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자살자의 유족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자살예방센터와 연계하여 지원 대책을 안내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함.

문 의 처
02)6788-5498